

## 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『KEB하나 고정금리 재형저축』 특약(구 하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조항명 변경, 행명 변경,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<p>『KEB하나 고정금리 재형저축』 특약(구 하나은행)</p> <p><b>제 1 조 약관의 적용</b>            이 특약은 고객과 <u>하나은행</u>(이하 “은행”이라고 한다)과의 「KEB하나 고정금리 재형저축」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고 한다) 거래에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령, <u>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</u> 및 <u>적립식 예금약관(구 하나은행)</u>을 적용합니다.</p>	<p>『KEB하나 고정금리 재형저축』 특약(구 하나은행)</p> <p><b>제 1 조 적용범위</b>            이 특약은 고객과 <u>KEB하나은행</u>(이하 “은행”이라고 한다)과의 “KEB하나 고정금리 재형저축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고 한다)” 거래에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령, <u>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</u> 및 <u>『적립식예금 약관』</u>을 적용합니다.</p>	조항명 변경 행명 변경 구행명 삭제
<p><b>제 2 조 ~ 제 9조</b> (생략)</p> <p><b>제 10 조 제한사항</b>            ① ~ ③ (생략)            ④ 이 약관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, 시행규칙의 변경 시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. 다만 은행은 그 변경 사항을 즉시 약관에 반영하고 이를 <u>예금거래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</u> 제21조 제1항*에서 정하는 게시 또는 공고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립니다.</p>	<p><b>제 2 조 ~ 제 9조</b> (좌동)</p> <p><b>제 10 조 제한사항</b>            ① ~ ③ (좌동)            ④ 이 약관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, 시행규칙의 변경 시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. 다만 은행은 그 변경 사항을 즉시 약관에 반영하고 이를 <u>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</u> 제21조 제1항*에서 정하는 게시 또는 공고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립니다.</p>	구행명 삭제
<p><b>제 11 조 ~ 제 13 조</b> (생략)</p>	<p><b>제 11 조 ~ 제 13 조</b> (생략)</p>	